

2026년 달라지는 사항

○ 주요 변경 내용 중심으로 정리, 의미 변경 없이 단순 내용정리 및 오타 정리 등은 미기재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b>II. 공통사항</b>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우선지원> (p20)	○ 신설  ○ 신설  ○ 신설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02-2080-6380) -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5-0067)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품종 표시(표고버섯만 해당), 포장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임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감: (사)한국감협회(02-2081-7641) -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  ○ 'K-FOREST FOOD' 또는 '숲푸드'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임산물 표준규격" 준수 임업인, 지역특화 임산물의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의 생산자(생산자단체), 산불특별법 제정 대비 초대형산불 피해 지역 임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필요  '뽕은감'의 '감'으로 명칭 변경, 각 자조금단체 연락처 현행화  '숲푸드' 브랜드 육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지원제한> (p21)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02-2080-6380) - (신설)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 - 감: (사)한국감협회(02-2081-7641) -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시·군 담당자)	거출금 부과 대상 중 누락된 임업인 추가, '25.7월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밤 추가  '뽕은감'의 '감'으로 명칭 변경, 각 자조금단체 연락처 현행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P.22)	- 신설  ④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내용 생략)  ⑤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내용 생략)	④ 자부담 자금 확보 여부 확인 - 사업 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 명의(개인 또는 단체)로 보유한 계좌의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사업 대상으로 선정  ⑤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내용 생략)  ⑥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내용 생략)	자부담 자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 추진 전 자금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 강화 조항 추가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3. 사업 관련 계약 <계약 방법> (P.23)	<p>○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p> <p>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 요청 가능</p> <p>- 신설</p>	<p>○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p> <p>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계약 대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행정 대행 요청 가능</p> <p>- 계약을 대행하는 지역 산림조합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대행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대행 수수료를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p>	<p>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액 기준 수정</p> <p>IT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임업인에 대한 원활한 행정처리, 지자체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산림조합의 대행 가능 근거 마련</p>
<b>Ⅲ. 임산물생산기반조성</b>			
<b>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b>			
(p25)	<p>*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 ~ '25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26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p> <p>* 신설</p>	<p>*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 ~ 전년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p> <p>* 제출서류(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서 및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가입자는 임업인 증빙서류 및 경영실태확인서 등 제출)</p>	<p>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토양개량 및 유기질 비료에 대한 신청서류 간소화</p>
<b>2.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b>			
(p27)	<p>(지원 내용)</p> <p>*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 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p>	<p>(지원 내용)</p> <p>*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계획에 숲가꾸기 포함 시 숲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기존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풀베기, 덩굴 제거, 가지치기는 제외)</p>	<p>숲가꾸기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만 해당됨을 명확히 안내</p> <p>기존 숲가꾸기 사업 실행 중인 경우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 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p>
(p28)	(지원 한도) 소액사업	(지원 한도) 소액사업	소액사업도 필요에 따라 실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 종자, 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 가능	* 종자, 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감리 가능	시설계 가능함을 안내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중별 지원 조건 및 단가 (P.29)	① 인건비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슈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인건비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슈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 제거, 슈아베기는 신규사업에 한하여 지원, 작업로의 시설 및 보수는 지속 지원 가능	기반조성 완료 후 인건비와 같이 단순 소모성 경비의 반복 지원 제한 작업로는 지속적인 보수 및 추가 신설 작업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 다시 선정될 경우 지원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중별 지원 조건 및 단가 (P.30)	② 종자·묘목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 법 ~ 한 자에게서 구입  - (지원한도) 공모사업 : 2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 총사업비의 20% 이하	② 종자·묘목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 법 ~ 한 자에게서 구입  - (지원한도) 공모사업 :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 총사업비의 30% 이하	조경수 등 묘목 구입 시 제한 사항이 많아 육묘업 등록자까지 확대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중별 지원 조건 및 단가 (P.32)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보습배지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친환경 생분해 비닐을 사용하거나 비닐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 고려)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중별 지원 조건 및 단가 (P.33)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 고려하여 판단 * 신설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 고려하여 판단 * 상면배지에서 봉형배지 전환 시설도 지원. 단,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설만 해당	임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 관리 종료된 시설은 시설 전환 지원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중별 지원 조건 및 단가 (P.35)	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는 시설 불가	재배·생산한 임산물의 저장·목적인 시설만 지원,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 사용 제한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최초 1회만 지원하되,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소액 사업은 세부 지침의 적정소요량 적용	임업인 건의 사항 반영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 화 공중별 지원 조건 및 단가 (P.36)	②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 면적)는 ~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따른 관리자(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 여 설치	②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 면적)는 ~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작업대기·휴 식 공간 면적이 25% 이하 인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	농업용 시설과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분 을 명확화
<b>3. 임산물 생산기반조성</b>			
o 공중별 세부내용 및 단가 (p37)	① 생산장비 - (지원요건)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 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 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이어야 하며	① 생산장비 - (지원요건) · 4륜구동 오토바이와 동력 운반차 중 승용형은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이어야 하며	모호한 용어에 대한 문구 재 배치를 통한 순화 현지 여건 등에 따른 임업인 요구 사항(재배 면적 축소) 반영
<b>IV. 청정임산물이용증진</b>			
<b>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b>			
o 지원 구분 및 한도 (p42)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하(총 사업비 20억원 이하)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 주) 5인 이상인 법인, ~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 이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 국비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가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 나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다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 이 5억원 이상인 법인	지원 대상 기준의 명확화
<b>3.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b>			
o 지원 구분 및 한도 (p44)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0백 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백만 원~10백만원/건(총사업비 5 백만원~50백만원 이하)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일정 규모 이상 지원이 필요한 임업인 지원 기회 제고를 위한 소액 사업의 최소 기준 금액 확정
<b>4.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b>			
o 지원 내용 (p45)	<b>임산물 유통차량</b>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 적 3,300㎡ 이상인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 진 차량 생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b>임산물 유통차량</b>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 배 면적 1,650㎡ 이상인 경 우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 법」시행으로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현지 여건 등에 따른 임업인 요구 사항(재배 면적 축소) 반영 「대기환경보전법」이 '24년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불필 요한 문구 삭제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필요 임산물 ~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차량(화물차·냉동탑차)의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필요 임산물 ~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1톤 LPG엔진 차량 생산	
	<b>유통 장비 및 기자재</b> 지게차(2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 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신설	<b>유통 장비 및 기자재</b> 지게차(2.5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 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임업인 요구 사항 반영한 지게차 적재하중 상향
o 지원 구분 및 한도 (p46)	* 신설  * 신설	* 사업 신청자 1인 기준 1건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예) 차량, 저장시설 일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사업비 기준: 국비 2백만원 ~20백만원 이하/건 (총사업비 10백만원~100백만원 이하)	여러 임업인에게 보조사업 지원 혜택 제공을 위해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지원은 회당 1건만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소액사업의 최소 기준 금액 확정
<b>V.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b> <b>1.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b>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p48~50)	V 신설	V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26년 신규 세부사업으로 사업시행지침 마련
<b>[참고 4] 신기술 기계장비 예시</b>			
o 신기술 기계장비 예시 (p85)	⑬ 신설	⑬ 포장 용기 활용도: (다래) 원물 포장 금액(만원): 0.55 장비사진 	